

고급자격증 소지자

구 분	지 원 자 격
<p>고급자격증 소지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『변호사법』 제4조에 의한 <u>변호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회계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공인회계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세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의한 <u>감정평가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법무사법』 제4조에 의한 <u>법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<u>공인노무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기술사법』 제2조의 <u>기술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건축사법』 제7조에 의한 <u>건축사</u> 자격을 취득한 자